

2021년도 제2차 재활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안내

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의무교육 시행(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)에 따른 재활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<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>

제40조의2(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) ① (생략)

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(선고유예는 제외한다)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(이하 “수강명령”이라 한다)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(이하 “이수명령”이라 한다)을 병과(併科)하여야 한다. 다만,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~⑦ (생략)

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2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⑨ (생략)

□ 프로그램 운영 일정

- 교육신청 및 수강기간: 11.19. ~ 12.6.(18일간)
- 수강방법 : 로그인(회원가입) → 교육과정 : 「강사양성과정」 신청 → 강의 수강
- 수강과목 및 시간: 별첨 1 참조
- 이수기준: 진도율 80% 이상, 지필평가 70점 이상(응시기회 3회)
 - ※ 수료증: 수료자 본인이 직접 발급(직접 PDF File 출력)
- 이수자 특전: 별첨 2 참조
- 기타
 - 수강기간 동안에만 강의 신청 및 수강 할 수 있습니다
(※ 수강기간 외에는 강의 신청 및 수강 불가)
 - 문의: 온라인교육사이트 [문의게시판](#)에 질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담당자가 회신 드립니다.
(※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전화문의는 삼가 바랍니다.)